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소비자권의 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피해구제처리의 신청에 관한 인용조문 변경 (안 제19조)
-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(안 제27조)
-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(안 제28조 ~ 제29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안 제30조 ~ 제31조)
-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 (안 제32조 ~ 제33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 배경

-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운영되던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 중 물가대책분과와 소비자정책분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음
-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(심의위원회 등)은 명칭,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”으로 해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관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신설을 위해 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9조에 피해구제처리의 신청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함
- 안 제27조에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- 안 제28조, 안 제29조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함
- 안 제30조, 안 제3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함
- 안 제32조, 안 제3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 사항을 신설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통합 운영되었던 기능 중 하나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령인 「소비자기본법시행령」 제20조¹⁾를 반영하여 소비자의

1)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

①시·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1.>

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“충청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”를 설치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

- 다만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 안정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